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7일, 이연희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
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차 전체회의(2026.4.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연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능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금 수령 이후 자진이주, 퇴거 거부로 인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현행법 제43조에 따른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무상 사업시행자 측에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발생 등을 우려하여 고발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또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토지·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대행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도·이전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현행법 또는 현행법상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행법 제43조에 따른 인도 의무 및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인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 미이행에 대한 현행 대집행 및 벌칙 등의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 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및 연간 부과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법익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부과금액 상한액 ‘1천만원’은 정액 부과 방식을 취하는 다수의 법률이 부과금액의 상한을 500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됨.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행정기본법」 제 31조의 이행강제금 조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종욱)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